

〈 창업희망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

1. 본 서류는 ‘대외 공개용 정보공개서’로서, 정보공개서 원본에서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모두 비공개 처리하여, 대외 공개하기에 적합하도록 바꾼 것입니다.

원본을 확인하려는 경우 해당 가맹본부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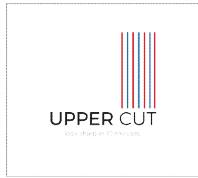
2. 가맹계약을 체결하시려는 경우, 반드시 가맹본부에게서 본 서류가 아닌 정보공개서 원본을 받아 보고, 14일의 숙고기간 동안 그 내용을 검토해 보신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원본을 제공하지 않거나, 14일의 숙고기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됩니다.

3. 본 서류의 내용은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변경 등록하거나, 비공개 대상 항목이 변경되는 등의 경우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장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 20160132
정보공개서 최초 등록일 : 2016.02.11
정보공개서 최종 등록일 : 2023.08.01

가맹본부의 인터넷주소
www.iniceguy.com
대표 이메일 주소
ds5pcw@gmail.com

[어퍼컷]

정 보 공 개 서

주식회사 정우인터내셔널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2024년 04월 15일

(주) 정 우 인 터 내 셔 날

<주 의 사 항>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 수행 능력을 갖추는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송파구 삼전로7길5, 5층(잠실동, 화영빌딩)

대표전화번호 : 02) 409 - 4600

대표팩스번호 : 02) 409 - 4621

담당부서 및 전화번호 : 영업지원팀 02) 409-4600

목 차

-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 II.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 III.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 VI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 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공정거래조정원 또는 시·도에 등록된 정보공개서(<http://franchise.ftc.go.kr>)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한국공정거래조정원(<http://franchise.ftc.go.kr>)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곳의 정보(가맹점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인근 점포를 직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필수사항’ 과 ‘창업희망자를 위한 가맹사업 계약체결 안내서’를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 ‘정보마당’ - ‘교육자료’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 ‘법령 및 제도’ - ‘법령자료’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 참고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공정위 등에서 심사 중인 경우에는 실제 내용과 본 정보공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으시면 가맹본부에게 변경등록 신청여부 및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반드시 확인받으시고, 필요한 경우 추후 변경등록이 완료된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 및 인·허가 >

헤어샵 퍼머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공중위생관리법 제3 조 및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귀하께서는 헤어샵 퍼머와 가맹계약을 체결 하게 되면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서정하는 바에 따라 담당구청에 공중위생영업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영업 신고 및 사업자등록 등 제반 인·허가 사항은 귀하께서 직접 귀하의 비용과 노력으로신고 및 취득하여야하며 당사는 영업신고를 비롯하여 제반 인·허가 사항이 완료되지 못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에 대하여는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공중위생영업의 신고 및 폐업신고)

(1)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 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 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0.1.18.>

(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위생영업의 신고를 한 자(이하 “공중위생영 업자” 라 한다)는 공중위생영업을 폐업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5.3.31.>

(3)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개정2005.3.31., 2008.2.29., 2010.1.18.>

공중위생관리법 제8조(이용사 및 미용사의 업무범위등)

(1)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면허를 받은 자가 아니면 이용업 또는 미 용업을 개설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 할 수 없다. 다만, 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감독을 받아 이용 또는 미용업무의 보조를 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1. 가맹본부의 일반 정보

당사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호	사용 브랜드		주 소			
(주)정우인터 내셔널	어퍼컷 외 4개		서울시 송파구 삼전로7길 5, 5층(화영빌딩)			
	설립일	법인 설립등기일	사업자등록일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2001. 1. 18.	2001. 1. 18.	2001. 1. 18.	KANG EUN HEE	02-409-4600	02-409-4621
	법인등록번호	110111-2154526		사업자등록번호	215-86-02754	

2.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

관계	이름/상호 ^①	영업표지	주 소		
대표이사	KANG EUN HEE (주)정우인터내 셔널	나이스가이, 셀프와인, 어퍼컷, 나이스컬러, 나이스헤어	서울시 송파구 삼전로7길 5, 5층(화영빌딩)		
			대표자 ^②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KANG EUN HEE	02-409-4600	02-409-4621
이사	반애경 (주)정우인터내 셔널	나이스가이, 셀프와인, 어퍼컷, 나이스컬러, 나이스헤어	서울시 송파구 삼전로7길 5, 5층(화영빌딩)		
			대표자 ^②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KANG EUN HEE	02-409-4600	02-409-4621

3.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내역

당사는 최근 3년 동안 다른 기업(가맹사업 브랜드 포함)을 인수·합병하거나 다른 기업(가맹사업 브랜드 포함)에 인수·합병된 적이 없습니다.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앞으로 [어퍼컷]이라 합니다)의 내용

귀하는 앞으로 아래 표에 따른 가맹사업을 경영하게 됩니다.

구 분	내 용	추가 설명
명 칭	어퍼컷	
상 호	어퍼컷 OO점	
상표(서비스표)		서비스표 출원번호: 41-2016-0001911
광 고		
그 밖의 영업표지		

5. 바로 전 3개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1) 당사의 최근 3년 동안의 재무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부가세 미포함)

연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매출액	영업 이익	당기 순이익
2021년	1,515,148,049	562,628,190	952,519,859	1,512,768,017	150,984,607	156,795,910
2022년	1,564,423,943	450,646,671	1,113,777,272	1,697,424,211	152,329,012	161,257,413
2023년	1,939,269,300	606,005,227	1,333,264,073	1,961,604,287	198,474,278	219,486,801

그 근거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차 대조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손익계산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2) 당사의 최근 3년 동안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당사에서 추정한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은 당사 전체 매출액의 99.99%입니다.

6. 가맹본부의 임원 명단 및 사업경력

당사의 임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여부	이름	현 직위	사업경력		
			기간	직위	담당 업무
가맹사업 관련 임 원	KANG EUN HEE	대표이사	2007 .12. ~ 현재	(주)정우인터내셔널	회사 업무
				대표이사	총괄
	반애경	이사	2006.01.~2016.10.	(주)정우인터내셔널 점장	셀프와인
			2016.11~	(주)정우인터내셔널 이사	이사

7.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

당사의 작년 말 임직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점	임원수(명)	직원수(명)
2023년 12월 31일	2(상근-1명, 비상근-1명)	8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 사실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다음과 같이 가맹사업을 경영하였거나 경영하고 있습니다.

관계	상호/이름	구분	기간 ^①	사업내용 ^②
가맹본부	(주)정우인 터내셔널	가맹사업 경영	2001.11. ~ 현재	나이스가이(등록번호: 20080100573)이라는 영업표지의 서비스업 경영
		가맹사업 경영	2006.03.~현재	셀프와인(등록번호: 20080100572)이라는 영업표지의 서비스업 경영
		가맹사업 경영	2016.02~현재	어퍼컷(등록번호:20160132) 이라는 영업표지의 서비스업 경영
		가맹사업 경영	2020.12~현재	나이스컬러(등록번호: 20201830)이라는 영업표지의 서비스업 경영
		가맹사업 경영	2021.09~현재	나이스헤어(등록번호: 20212144)이라는 영업표지의 서비스업 경영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당사가 귀하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칭	권리내용	등록 및 등록신청 여부(일자)	출원번호 및 등록번호	소유자 (등록신청자)	등록 만료일
UPPERCUT (상표권)	사용하게 될 영업표지	2016.09.23	출원 제41-2016-0001911호 등록 제41-0372543-0000호	(주)정우인터내 셔널	2026. 09.23

귀하가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당사의 상표(특허)를 사용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의 지식재산권 내용은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검색서비스(<http://www.kipr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II. 가맹본부의 [어퍼컷] 가맹사업 현황

1. [어퍼컷] 을 시작한 날: 2016년 2월 11일

2. [어퍼컷] 연혁

가맹본부 상호	영업표지	대표자의 이름	가맹사업 경영 기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주)정우인터내셔널	나이스가이	박영길	2001.1.18. ~ 2007.11.29	서울시 강남구 수서동 714-6
(주)정우인터내셔널	나이스가이	KANG EUN HEE	2007.11.30. ~ 현재	서울시 송파구 삼전로7길5, 5층(화영빌딩)

3.[어퍼컷] 업종

영업표지	업종	
어퍼컷	대분류	소분류(주요상품)
	이미용업	남성커트

4. 바로 전 3년간 사업연도 말 영업 중인 [어퍼컷]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

(단위: 개)

지역	2021.12.31.			2022.12.31.			2023.12.31.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4	4	-	4	4	-	4	4	-
서울	1	1	-	1	1	-	1	1	-
부산	-	-	-	-	-	-	-	-	-
대구	-	-	-	-	-	-	-	-	-
인천	-	-	-	-	-	-	-	-	-
광주	-	-	-	-	-	-	-	-	-
대전	-	-	-	-	-	-	-	-	-
울산	-	-	-	-	-	-	-	-	-
세종	-	-	-	-	-	-	-	-	-
경기	3	3	-	3	3	-	3	3	-
강원	-	-	-	-	-	-	-	-	-
충북	-	-	-	-	-	-	-	-	-
충남	-	-	-	-	-	-	-	-	-
전북	-	-	-	-	-	-	-	-	-
전남	-	-	-	-	-	-	-	-	-
경북	-	-	-	-	-	-	-	-	-
경남	-	-	-	-	-	-	-	-	-
제주	-	-	-	-	-	-	-	-	-

5. 바로 전 3년간 [어퍼컷] 가맹점 수

(단위: 개)

연도	연초	신규 개점	계약 종료	계약 해지	명의 변경	연말
2021	3	1				4
2022	4					4
2023	4					4

6. [어퍼컷]외에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 현황

당사는 [어퍼컷]외에도 4개의 가맹사업을 경영하고 있으며, 당사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개)

구분	상호/이름	영업표지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업종	가맹점/직영점의 수		
					2021.12.31.	2022.12.31.	2023.12.31.
가맹본부	나이스가이	나이스가이	20080100573	이미용업	196/0	217/0	230/0
가맹본부	셀프와인	셀프와인	20080100572	서비스업	2/0	2/0	2/0
가맹본부	어퍼컷	어퍼컷	20160132	이미용업	4/0	4/0	4/0
가맹본부	나이스헤어	나이스헤어	20212144	이미용업	1/0	12/0	17/0
가맹본부	나이스 컬러	나이스 컬러	20201830	이미용업	0/0	0/0	0/0

7. 바로 전 사업연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직영점 매출은 제외)과 그 산정기준

지역 ^④	2023년 말 가맹점수	2023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⑤
		연간 평균 매출액		연간 평균 매출액(상한)		연간 평균 매출액(하한)		
		연간 평균 매출액	면적 3.3m ² 당	상한	면적 3.3m ² 당	하한	면적 3.3m ² 당	
전체 ^⑥	4	가맹점 매출액 확인 불가						가맹점 매출액 확인 불가
서울	1	가맹점 매출액 확인 불가						가맹점 매출액 확인 불가
부산	-	해당없음						
대구	-	해당없음						
인천	-	해당없음						
광주	-	해당없음						

대전	-	해당없음						
울산	-	해당없음						
세종	-	해당없음						
경기	3	가맹점 매출액 확인 불가						가맹점 매출액 확인 불가
강원	-	해당없음						
충북	-	해당없음						
충남	-	해당없음						
전북	-	해당없음						
전남	-	해당없음						
경북	-	해당없음						
경남	-	해당없음						
제주	-	해당없음						

8. [어퍼컷]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어퍼컷]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중인 가맹점사업자의 평균 영업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	영업중인 가맹점 수	평균 영업기간[일]
2023	4	2,220

9.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의 일반 정보

당사는 [어퍼컷] 가맹점 관리를 위하여 지역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10. 광고·판촉 지출 내역

당사에서 [2023년]에 [어퍼컷]와 관련하여 광고비 및 판촉비로 사용한 금액은 총 [0]원이며, 구체적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수단	기간	지출 비용(단위: 원)			비고
			합계	가맹본부	가맹점	
합계			-		-	
광고	소계		-		-	
	(비공개)	수시	-		-	
	(비공개)	수시	-		-	
판촉	소계		-		-	
	(비공개)	수시	-		-	

11. 가맹금 예치

귀하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가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예치 없이 오픈일 가맹금을 지급합니다

가맹금 예치와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알아두어야 할 사항

1.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시작하거나 가맹계약 체결일 부터 2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이 가맹예치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됩니다.
2.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맹금의 지급이 보류됩니다.
 - 가.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 나.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알선, 조정, 중재 등을 신청한 경우
 - 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반환 사유가 발생하여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경우
3. 2번의 가-다의 조치를 취한 경우 그 사실을 예치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예치가맹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12.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해당사항 없음

Ⅲ.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1. 공정거래위원회의 또는 시·도 지사의 시정조치 등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약관규제법에 대한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5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와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3. 형(刑)의 선고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5년 동안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귀하가 [어퍼컷]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총 40,500,000만원(부가세포함)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점포의 임대비용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 설비의 종류, 영업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부담하여야 할 대가는 매우 다양하나 크게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분	지급 대상	예치 대상 여부	비고
최초 가맹금	가맹본부	예치하지 않음	확정 금액
보증금	가맹본부	예치하지 않음	확정 금액
기타 비용	가맹본부 또는 다른 업체	예치하지 않음	추정 금액

1) 최초 가맹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 만원, 부가세포함)

구분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총계	1,210				
계약금	1,210	오픈일	반환되지 않음	가맹점 모집을 위해 비용 소요	영업을 시작하면 가입비로 대체

2) 보증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보증금은 계약 종료 시 전액이 귀하에게 반환되는 대가입니다. 다만, 귀하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단위: 만원, 부가세없음)

구분	금액	지급 기한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	비고
총계	200	오픈일		
보증금	200	오픈일	가맹금 및 로열티 미지급, 본사가 공급한 물품 파손 등	

3) 예치가맹금의 범위와 그 금액
- 예치 없음

4) 귀하가 그 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 만원, 부가세 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면적 3.3㎡	지급 기한	반환조건	비고
총계	(주)정우인 터내셔널	3,410				
인테리어, 가구 (점포 내장공사)	(주)정우인 터내셔널	2,398	239	내부 인테리어 공사 시작전	공사 전 계약취소	33㎡ 3.3㎡ 늘어날 때마다 130만원 추가부담
간판 및 싸인	(주)정우인 터내셔널	352		내부 인테리어 공사 시작	간판 제작전 취소	
물류	(주)정우인 터내셔널	440		물품 발주 3일 이전	상품 미공급시	
홍보	(주)정우인 터내셔널	220		홍보 시작 3일 이전	홍보 미실시시	
감리비	(주)정우인 터내셔널	330		내부인테리어 공사 이전		인테리어 자체 시공 시에만 적용 (단, 인테리어 비용은 조정)

(지급금액에 대한 기준면적 33㎡)

[위 표의 금액은 당사가 그 동안의 가맹점 운영 경험을 토대로 추정한 것으로 실제 지불 금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 위 표에 기재된 비용 중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한 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와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할 경우** 인테리어 공사 관련, 당사의 **설계 및 감리 대가로 33㎡ 기준으로 330만원을** 내부 인테리어 공사 완료 후 3일 이전에 당사에 **추가 지급하여야 합니다.**

※ 당사의 가맹금 및 계약이행보증금 반환조건은 계약서 제39조(가맹금의 반환)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최초 계약 기간 내에 계약이 해지된 경우 “당사”는 “가맹사업자”로부터 지급받은 가맹금에 대하여 각호 1의 규정에 따라 반환한다.

1 가맹사업 개시 이전에 계약이 해지된 경우

1. “당사”는 “가맹사업자”에게 인도된 상품 및 제공된 서비스(교육 및 정보제공의 대가 등)의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반환한다.

2 가맹사업 개시 후 계약이 해지된 경우

1. 가맹비는 “당사”의 『UPPERCUT』 가맹사업에 가맹점으로 참여하기 위하여 최초 발생하는 소멸성 비용으로서 가맹사업 개시 후에는 반환되지 않는다. 다만, “당사”의 귀책사유 또는 “당사”와 “가맹사업자” 모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2. 위 1.목 단서의 경우 반환되는 금전에 대하여는 가맹계약의 체결경위, 지급된 금전의 성격, 가맹계약기간, 계약이행기간, 가맹사업당자사의 귀책 정도 등을 고려하여 그 반환 범위를 결정하여 반환될 수 있다.
3.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행보증금에 대하여는 계약의 기간만료일 또는 해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이행보증금으로 잔존 채무·손해배상액을 정산하여 잔액을 상환하고 정산서를 교부한다.

5) 가맹점 입지 선정 주체 및 선정 기준

당사는 신규 가맹점 입지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선정 주체	선정 기준
당사 영업팀 (전화:02-409-4600)	담당자 배정 → 상담을 통하여 가맹희망자가 원하는 지역 파악 → 현장 조사 등 시장 분석 → 최적의 입지 도출 → 가맹희망자에게 동의 여부를 구함 ※ 가맹희망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 새로운 입지를 정할 수 있으나 영업이 늦어지는데 따라 발생하는 비용을 추가로 부담할 수 있습니다. ※ 가맹희망자가 직접 입지를 결정하는 경우 가능 (단, 해당지역 가능성 검토 후 진행)

6)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교육 및 계약·채용 기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을 받거나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에 종업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교육 기준	계약·채용 기준
가맹점사업자	국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을 것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이 아닐 것 만20세 이상일 것
종업원	이, 미용 자격증 소지자	만18세 이상일 것

7)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공급업체

어퍼컷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물품이 필요합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2. 영업 중의 부담

1) 비용 부담

귀하가 영업을 시작한 후에도 다음과 같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단위: 만원, 부가세 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지급기한	반환 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총계						
상표사용료	(주)정우인터 내셔널	39.6/월	당월 25일			
리스료		해당없음				
광고 분담금	(주)정우인터 내셔널	광고 비용의 부담은 광고 지역내의 점포 수에 따라 안분하여 “갑”과 지역내의 가맹점사업자들이 나누어 분담한다. 광고에 소요되는 비용은 “갑”이 10%, “가맹점사업자”(전국단위의 광고의 경우에는 전국의 “가맹점사업자”, 지역단위의 광고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가맹점사업자”)가 90%씩 부담한다. 각 “가맹점사업자” 간의 비용부담의 배분은 각 가맹점의 총 매출액에 따른 비율에 의한다	다음 월 20일			필요 시
리모델링 비용	(주)정우인터 내셔널	1,000~1,500	리모델링 공사 실시 5일 이전			필요 시
점포환경개 선비용	(주)정우인터 내셔널	가맹본부 분담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34페이지 참조
지연이자	(주)정우인터 내셔널	연25%	지급하는 날까지			상품대금 로열티

2)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지급
월로열티 이외에 필수구입요구 품목 없음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감독

-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가 파견하는 경영지도원의 요구가있을때에는 영 업장부 기타 영업관련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영지도원의 요구가 있을때에는 영업장부 기타 영업관련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 우 경영지도원은 자신의 신원증표를 제시하고, 방문 일시와 목적 및 제 공받는 자료의 목록을 기재한 서면 을 가맹점사업자에게교부하여야 한 다.(21조)
-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의 상호, 상표, 서비스표, 특허 등을 제 3자가 사용하거나 그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며 가맹점사업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할 경우에는 즉시 그 사실을 가맹본부에 통지하여야 한다. (31조5항)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1) 계약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의 추가 부담

귀하가 당사와 계약이 종료된 후에 연장(갱신, 재계약을 포함한다)하기 위해서 부담해 할금액은 없습니다.

2)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해 계약 종료 시 조치사항

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상계 여부
당사가 가맹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을 종료하고 계약관계를
탈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양수한 사업자(가맹본부)와의 계약 관계 유지를
원할 경우에는 가맹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나)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가 가맹점운영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용을 허가한 상표권,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이
존속기간의 만료, 소유권(사용권) 변경, 효력 상실 등의 사유로 더이상 지식재산권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며,
이로 인해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가맹점사업자와 협의하여 이를 배상하도록 한다.
또한,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대체수단이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에는 가맹점
사업자는 체결한 가맹계약을 해지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 귀책사유 등을 감안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는 원칙적으로 모든 가맹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가맹사업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당사가 가맹사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에는 이를 미리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것입니다. 이 경우 귀책사유 등을 감안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가맹점 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

귀하가 운영하는 어퍼컷 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주) 정우인터내날에
110만 원(진행 주체 판단 후)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 한 양수인은 (주)정우인터내셔널에
가맹비 1,210만 원(VAT포함)과 보증 금 2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4) 계약 종료 후의 조치 사항

귀하는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어퍼컷] 브랜드임을 알 수 있는 어떠한 식별기호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됩
니다. 또한 당사를 나타낼 수 있는 표시물과, 관리프로그램, 관련 자료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내용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귀하가 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 후 가맹본부의 영업표지를 사용할 경
우 무단 상표 사용에 해당되며, 종료 또는 해지일 이후 무단 상표 사용기간에는 위약금으로 1일 금일
십만원(100,000)이 발생되며, 귀하는 당사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계약서 36조)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지급한 계약이행보증금의 정산잔액과 정산서를 받을 때까지는 상호간판 등의
철거 내지 제거, 영업관리 자산의 반환의무 이행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 의무이행과 관련하여 필요
한 비용은 계약종료에 책임 있는 당사자가 부담합니다.]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신중히 살펴본 후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1. 물품 구입 및 임차

귀하가 [어퍼컷]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자와 거래해야 할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물품을 지정된 사업자가 아닌 사업자에게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 다른 품목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도록 하고 있으며,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본 정보공개서의 내용에 따라 사업을 진행합니다.

- 1) 구입요구 품목 현황 : 없음
- 2)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 없음

2. 거래 요구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 1) 당사는 [어퍼컷]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주선하여 특정한 거래상대방이나 가맹점사업자에게 대가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 2) 당사는 [어퍼컷]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주선하여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3.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 1)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상품·용역만을

판매하여야 하며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비고
미용 서비스	합법한 서비스 제공	1회 위반: 구두 경고 2회 위반: 서면 시정요구 시정 요구 후 2월 이후 지속 위반 시 : 계약 해지	
미용 기기	합법한 기기 사용		자점 매입 가능
물품	합법한 물품 판매		자점 매입 가능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되지 않은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도록 하고 있으며,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본 정보 공개서의 내용에 따라 사업을 진행합니다.

2) 거래상대방(고객)에 따른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는 거래상대방에 대한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당사는 귀하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은 가맹사업자와 협의 하에 결정하고 있습니다.

4. 가맹점 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1) 독점적·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체결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는 가맹계약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 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가맹점을 추가 개설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업종 범위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	
남성고객 위주의 헤어샵 (전체 매출액 중 남성고객 매출액이 70%)	가맹본부	계열회사
	나이스가이,어퍼컷	해당없음

2) 영업지역의 설정 기준

[당사는 영업지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설정 기준	설정방법
점포를 중심으로 반경 300m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 (지도별첨을 원칙으로함)

3)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갱신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맹점사업자의 합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지역 재조정 사유	재조정 절차	동의를 얻는 방법
①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개발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②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③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④ 위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조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영업지역 변경(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영업지역 변경 완료	영업지역 변경(안)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동의가 있는 경우 15일 이내에 영업지역 재조정 완료 (신규 점포 입점 가능)

4)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와 약정한 영업지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역지역에 속한 고객에게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 가맹점사업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첫째,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의 고객과 거래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두 가맹점사업자 간의 보상금 지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하는 행위]

둘째, 영업지역을 침해받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조정 요구가 있는 경우 매출액 현황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

셋째, 특정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반복적으로 침해하여 ‘어퍼컷’ 영업표지 이미지에 심각한 손해를 가한 경우 그 가맹점사업자에게 행위의 시정을 요구하고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행위

5) 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

- 없음

6)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구분 ^①	유통업체명 ^②	주소	취급품목 ^③	가맹점과의 구분 ^④
온라인	해당없음			
홈쇼핑	해당없음			
전화권유판매	해당없음			

5. 가맹본부의 온라인·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연간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단위: %)

연도	국내 온라인·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계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온라인 판매 매출액		
	가맹점	기타 오프라인	자사 온라인몰	기타 온라인	
2023	확인 불가	0	0	0	0

* 각 채널 판매 매출액의 비중은 각 채널 판매 매출액의 합계에서 해당 채널 판매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국내 판매상품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용 판매상품의 비중

(단위: %)

연도	오프라인 전용상품 수	온라인 전용상품 수	해당 영업표지의 상품 수
2023	100	0	1

6.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연장·종료·해지·수정

1) 가맹계약 및 갱신 기간

[어퍼컷] 가맹사업의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이며,
가맹계약 갱신시, 계약기간은 [계약갱신일로부터] [1]년입니다.

2)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귀하에게는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간 주어집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 서	기간(계약만료일: D-day)
①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까? 예→②, 아니오→⑦	D-180 ~ D-90
② 3)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까? 예→④, 아니오→③	D-180 ~ D-90
③ 가맹본부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⑤, 아니오→A	D-180 ~ D-90
④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거절 통지를 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A	①+15일 이내
⑤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였습니까? 예→C, 아니오→⑥	
⑥ 변경된 계약조건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입니까? 예→B, 아니오→D	
⑦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⑧	D-180 ~ D-90
⑧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까? 예→E, 아니오→A	D-60일 이전
A.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B.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D-day
C.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D.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조건을 바꾸어야 함(가맹본부가 계약 변경을 강행할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
E.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만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민사상 문제로 가맹사업법에서 특별하게 제한하는 규정 없음)	-

3) 계약 갱신 거절(종료) 사유

당사가 귀하와의 가맹계약 갱신을 거절할 사유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갱신요구 거절 사유	관련 계약조문
○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6조4항1호
○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귀하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6조4항2호
○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득을 하지 못한 경우	6조4항3호
○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침을 지키지 않은 경우	6조4항4호
○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다만, 교육·훈련 비용이 같은 업종의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보다 뚜렷하게 높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6조4항5호

4) 계약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당사가 귀하와의 가맹계약을 해지 할 수 있는 사유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갑”은 계약의 위반사실을 명시하여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하는 문서를 “을”에게 통지하고 2개월이 지나도 시정되지 않으면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을” 이 세금을 납부하지 못해 체납 처분을 당하거나, 주요 재산에 압류·경매 신청이 된 경우	26조1항1호
2. “을” 이 본 계약상 부담하는 금전지급의무를 해태하거나 지체하는 경우	26조1항2호
3. “을” 이 “갑”의 품질관리기준(납성커트전문)을 3개월에 3회 이상 위반하는 경우	26조1항3호
6. “을”의 채무액이 제15조의 계약이행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	26조1항6호
7. “을”이 제18조 제 1항 내지 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갑”의 영업비밀을 누설한 경우	26조1항7호
8. “을”이 제1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경업행위를 한 경우	26조1항8호
9. “을”이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갑”의 시정요구를 3개월에 걸쳐3회 이상 받은 경우	26조1항9호
10. “을”이 제22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갑”의 동의 없이 임의로 미용서비스 메뉴를 변경하거나 “갑”에 의해 변경된 메뉴를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26조1항10호
11. “을”이 제24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점 매입을 하거나 제2항에 의한 품질검사를 2회 이상 응하지 않는 경우	26조1항11호
12. “을”이 제28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26조1항12호
13. “을”이 제30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점포설비의 교체·보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26조1항13호
14. “을”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판촉활동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26조1항14호
15. “을 ”이 제39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6조1항15호
16. “을”이 공연히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갑”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거나 “갑”에 영업비밀 또는 중요정보를 유출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26조1항19호
17. “을”이 가맹사업의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의 위반사실을 통보 받은 후, 10일 이내에 이를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26조1항20호
18. “을”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는 경우	26조1항22호
19. “을”이 제13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여 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도 개점이 불가능한 경우	35조 1항 2호

가맹본부 해지 절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당사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귀하에게 서면으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 및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2회 이상 통지하고 있습니다.

가맹점사업자 해지 절차

가맹점사업자의 사정에 의하여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을 해지 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1개월 전에 가맹본부에게 계약해지의 내용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로 인해 가맹본부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가맹계약 해지 후 후속조치는 계약서 제36조 및 제37조와 같이 진행하여야 한다.

다만,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5조의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되는 아래의 경우에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이나 2회 이상의 서면통지 없이 계약서에 따른 절차를 거쳐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즉시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1.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2.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불정지된 경우 3.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4.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가.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나.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처분 다.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5.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등 그 사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6. 가맹점사업자가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가맹본부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법 제14조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한다. 7.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8. 가맹점사업자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35조3항

9.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	--

5) 계약 수정의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당사는 계약기간 중에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귀하의 동의를 얻어 계약 조건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계약 수정 사유	관련 계약조문
○ 영업지역의 개발이나 여건 변화가 있어 조정이 필요한 경우 상호 서면 합의를 통한 경우	5조

재조정 절차	동의 절차
계약 수정 사유 발생 → 당사 영업팀 검토 → 수정계약서(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수정 완료	수정 계약서(안)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동의를 있는 경우 수정계약서에 정한 날부터 효력 발생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 양도 · 상속 및 대리행사

1)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당사는 귀하가 가맹점을 운영하다가 개인 사정 등으로 조기에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새로운 가맹점 사업자를 찾을 때까지 일시적으로 가맹점운영권을 다시 사 들어 직영점 체제로 운영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2)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귀하가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업자(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하여 운영 할 자)에게 양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맹점사업자가 제3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하기 2개월 전에 가맹본부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가맹점사업자가가맹본부의 승인을 얻어 영업양도를 할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잔존 계약기간에 따른 가맹금은 포기한다.
- 가맹본부는 영업양도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서면으로 승 인 또는 거절의 의사표시를 사유가 없는 한 승인을 거절할 수 없으며, 거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명시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통 지하여야 한다.
- 가맹본부 영업양도를 승인한 경우 양수인은 승낙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내 에 가맹본부와 신규 가맹계

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르는 가맹비 금일천이백일십만원 (12,100,000)(VAT포함) 및 계약이행보증금 금이백 만 원(2,000,000)을 가맹본부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가맹점사업자는 양도에 따른 업무부담금 금일백일십만원(1,100,000)(VAT 포함)을 가맹본부의 승낙이있는 날로부터 7일이내에 가맹본부에게 지급 하여야 한다. 만일이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가맹본부는 승인을 철회할 수 있다.
- 가맹점사업자의 권리의 양수인은 영업개시 전까지 가맹본부가정한 소정 기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이에 대한 비용은 가맹비에 포함된다.
- 가맹본부의 사전승인 없이이루어진 양도 등은 가맹본부에대하여 효력이 없으며 가맹본부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가맹점운영권의 상속, 대리행사, 위탁 등

가맹점운영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귀하에게 주어집니다. 따라서 개인사정 등으로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대리행사하게 할 경우에는 당사에 사전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가맹점사업자의 상속인은 가맹점 운영을 상속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맹계약은 종료합니다.

구분	가능 여부(조건)	이전 범위	절차	기타 의무사항
상속	상속인 사후 통지시	모든 권리의무	가맹점사업자의 사망시 그 상속인은 상속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승계의 의사를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본 가맹점 운영을 계속할 수 있다. 상속인이 다수일 경우에는 운영을 승계할 자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교육수료:교육비200만원
대리행사	가맹점사업자 통지시	가맹점사업자가 지정한 범위 내의 권리의무	대리권 행사 시작일 2개월전에 문서를 통해 가맹본부에 통지	없음
업무위탁	가맹점사업자 통지시	가맹점사업자가 지정한 범위 내의 권리의무	가맹점사업자와 업무위탁자간의 계약 체결 1개월전에 문서를 통해 가맹본부통지	없음

8.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 · 감독

1) 경업금지의 범위

당사는 계약기간 동안 [지역 내에서] 귀하가 [어퍼컷]와 동일한 업종의 영업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귀하가 그러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가맹본부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업금지 되는 업종 ^①	경업허가 절차 ^②	비고 ^③
○ 일반인에게 머리카트 및 염색, 파마를 형태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경업허가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시장조사 포함, 30일 가량 소요) → 허가 여부 통지 → 완료	문의: 영업지원팀 (02-409-4900)

귀하는 계약의 존속기간 중에 가맹본부의 허락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명의로 가맹본부의 영업과 동종의 영업 할 수 없습니다.

2)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영업시간	영업일수	비고
10:00 ~ 20:00	월 20일 이상 개점	문의: 영업지원팀 (02-409-4600)

- 가맹점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월20일 이상 개점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7일 이상 연속하여 휴업할 수 없다. 다만, 가맹본부와 사전 승인을 얻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시간은 본사와 협의후 변경 가능하다
- 가맹점사업자가 휴업하고자 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가맹본부에게 휴업하기 7일전 까지 신청하여야 하며 가맹점사업자의 사유가 정당할 시 가맹본부는 승인한다.
- 샵앤샵 형태로 입점시 해당 샵의 운영시간 및 휴무등 운영지침을 준수한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10호에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 해지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개인 사정 등으로 영업을 불가피하게 중단하거나 영업시간을 조정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담당 영업팀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3) 권장 종업원 수 및 영업장 근무 여부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의 종업원 및 근무 형태를 제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권장 종업원수	직접 근무 여부	대체 가능 인력	비고
1명 이상	직접	점주의 배우자, 직계가족	점주의 부재 시 가맹본부에 사전 통보

4)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 · 감독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를 정기적으로 관리 · 감독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 · 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9. 광고 및 판촉 활동

1)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부담 기준

당사는 어퍼컷 브랜드 이미지 제고 및 매출액 증대를 위한 전국 단위의 광고 및 판촉 활동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가맹점사업자와 나누어 부담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광고 성격	부담비율		분담 절차	비고
		본사부담	가맹점부담		
광고 전체 행사	상품광고	광고비의 10%	광고비 90% 중 가맹점 총매출액 비율 따라 산정	광고 계획 공고 → 가맹점의 광고참여 여부 결정 → 가맹점부담액 제시(명세서)	대중매체 광고 명절, Day 이벤트 행사 (전국 행사)
	상품광고+ 가맹점모 집광고	광고비의 50%	광고비 50% 중 가맹점 총매출액 비율 따라 산정		
	가맹점 모집광고	전액 부담	없음		
개별 행사	행사에 따라 달라짐			행사 계획 공고 → 가맹점부담액 제시 → 가맹점의 행사 참여 결정 → 행사 종료후 최종 분담금 확정	월별 판촉 행사

전국단위의 광고일 경우 가맹점부담액은 광고비 중 일부를 광고시행 직전 분기의 각 가맹점사업자의 총매출액 비율에 따라 부담합니다. 지역 광고일 경우에는 해당 지역내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부담액 부분을 부담합니다.

2)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판촉 활동

개별 가맹점사업자가 스스로 또는 다른 가맹점사업자와 함께 독자적으로 광고·판촉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본부의 승인을 얻은 후, 시행할 수 있다.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당사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가맹본부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귀하는 계약체결 및 가맹점 운영상 알게 된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을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가맹본부의 허락 없이 교육과 세미나자료 기타 가맹점운영과 관련하여 영업비밀이 담긴 관계서류의 내용을 인쇄 또는 복사할 수 없습니다.

당사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1. 가맹계약 위반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이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시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게 배상하여야 한다.(배상액은 손해액에 따라 가맹비 범위내에서 상호 합의)

“가맹사업자”가 계약 기간 내 또는 계약 종료 이후 제18조(비밀유지 의무), 제19조(경업금지 의무)을 위반할 경우 “가맹사업자”은 “가맹본부”에게 위약금으로 일천만원 (10,000,000)을 지급하여야 한다.

Ⅵ.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1. 상담·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시작까지 필요한 절차 요약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담일로부터 실제 가맹점이 개설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약 40 일 정도가 예상되며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내용	소요기간	소요비용
합계		40일 내외	
가맹희망자 문의	- 전화문의 접수 - 희망지역 확인, 담당자 배정	D-40	
사업 설명·상담	-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제공 - 입지 주위 점포 10곳 정보 제공 (장래점포 예정지 확정시) - 가맹희망자 상담	D-49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 입지선정	필요시 실시	
최종 협의	- 개설 승인 - 계약서 제공	D-24	
가맹계약 체결	- 계약 체결	D-23	
가맹금 예치	- OO기관에 가맹금 예치	D-22(1일)	
점포실측/설계	- 투자비 산출	D-21~20(2일)	
실내외 공사착수	-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D-20(1일)	
인테리어 공사	- 공사 실시	D-20~19(15일)	
교육 실시	- 점포운영교육 실시	D-7~4(3일)	
점포 개설	-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D-day	

위 표에 따른 소요기간은 평균적인 가맹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협의 과정에서 시장상황 등에 따라 그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귀하는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는 본사에 소속되어 있거나 업무 연관성이 있는 변호사나 가맹거래사를 제외하고 귀하께서 선택하신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에게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시기 바라며, 특히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신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이 정보공개서 제공 14일 후에서 7일 후로 단축됩니다.

2. 가맹본부와의 분쟁 해결 절차

[가맹계약 당사자는 계약의 해석 또는 계약에 의해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법적 절차에 이르기 전까지 우선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합니다.]

[대화와 협상으로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연락처: 1588-1490, 홈페이지: <http://www.kofair.or.kr>) 또는 시·도의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해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재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법적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관할법원에 대해 약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및 시행령 제13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맹점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부담비율 및 구체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규정에 의거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및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비용분담을 하지 않습니다.]

점포환경개선 사유 ^①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 비용항목 ^②	○간판교체 비용 ○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가맹본부 부담 비용비율 ^③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가맹점사업자의 투자금액(임차료 등), 월평균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50% ~ 100%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50 ~ 80% -단, 집기·장비교체비용은 20% 부담
지급절차 ^④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에 의한 점포환경개선의 경우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 지급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분할지급 시 절차>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 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비용부담 제외사유 ^⑤	○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 해당 사항 없음.

3. 경영활동 자문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동에 대한 경영지도를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대상 및 내용 ^①	절 차 ^②	비용부담	비 고
가맹본부 권고 시	상품, 설비(집기), 판매촉진, 고객관리, 위생관리, 교육훈련,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본부 담당자가 가맹점사 업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경 영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 안을 서면으로 제시 하거나 구 두로 이를 설명	가맹점 부담	문의: 영업지원팀 (02-409-4600)
가맹점사업자 요청 시	상품, 설비(집기), 판매촉진, 고객관리, 위생관리, 교육훈련,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점사업자 경영지도 요청 →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경 영지도내용, 기간, 경영진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명, 소요비 용 등 포함)를 가맹점사업자에 게 제시 → 경영지도 후 []일 이내에 가맹본부 담당자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직접 방문 하여 경영지도 결과 및 경 영개선방안을 서면으로 제시 하고 이를 설명	가맹점 부담	문의: 영업지원팀 (02-409-4600)

4. 신용 제공 등 내역

당사는 [어퍼컷] 가맹점사업자를 위하여 신용 제공 또는 알선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돕기 위해 경영상 지원활동을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아래 지원내용 이외에도 가맹점사업자의 경영사정 등을 감안하여 추가 지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원정책	주요 내용	지원조건	지원기간	지원내용	비고
매출부진 경영지원	매출부진 가맹점 판매촉진을 위한 경영지원	정해진 조건은 없음. 각각의 매장 상황에 따라 결정	가맹계약기간	경영 컨설팅 제공	

VIII. 교육 · 훈련에 대한 설명

1. 교육 · 훈련의 주요내용

당사는 [어퍼컷] 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교육 ·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 · 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2. 교육 · 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귀하가 [어퍼컷] 가맹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교육 · 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최소시간	비용(부가세 포함)	비고
신규 교육	1일	가맹비 포함	최초 계약시 이수
특별 교육	1일	협의	필요시 이수

3. 교육 · 훈련의 주체

교육 · 훈련은 가맹계약을 맺는 당사자가 직접 받아야 합니다. [다만, 귀하가 직접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가맹점을 함께 운영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맹계약 당사자가 원하여 당사자 외 직원도 같이 교육을 받게 되면 인원 추가에 따라 비용도 추가됩니다.

4. 교육 훈련 불참시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

기한내 신규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가맹계약서 11조에 따라 개점일 내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기한 내 특별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가맹계약서 17조에 따라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당 사는 직영점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당 사는 직영점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산정기준

[당 사는 직영점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정보공개서 내용 문의 >

◇ 이상의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문의 사항이 있거나 정보공개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당사 (02-409-4600)으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객지원담당관실(440-200-4010)** 또는 **가맹거래과(help@ftc.go.kr)**로 문의하십시오. 개별 정보공개서 내용에 관한 문의는 받지 않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정보공개서는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 (<http://franchise.ftc.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별첨 1 >

< 초도 물품 목록 >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